

# 한국기술진흥(주)

## 투·융자 지원안내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는 89년도에 100억원을 신기술기업화 사업에 투·융자 지원하고 있음.

### 1. 지원대상

- 다음의 신기술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고 자 하는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
  - 국내 연구기관, 학계 및 발명가 등의 개발기술
  - 해외 연구기관 및 산업계의 선진기술.

### 2. 지원조건

#### 가. 투자조건

| 투 자 방 식  | 동일인당 투자한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취득</li> <li>·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금의 50%</li> </ul> |

#### 나. 융자조건

| 용 자 비 율      | 용 자 기 간                  |         | 용 자 금 리      |
|--------------|--------------------------|---------|--------------|
|              | 시 설 자 금                  | 운 전 자 금 |              |
| 소요자금의 90% 이내 | 10년이내 (1/3이내의 거치기간포함) 이내 | 1년이내    | 연 11.5~12.5% |

|       |                           |
|-------|---------------------------|
| 문 의 처 | ○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 : 732-1685-6 |
|-------|---------------------------|

### 「특허권 대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경과 조치에 대한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

특허권 등을 설정 등록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89.1.1이후에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88. 12. 31 이전에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